

보도시점 : 2023. 4. 12.(수) 11:00 이후(4.13.(목) 조간) / 배포 : 2023. 4. 12.(수)

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100% 감면한다

-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은 2년간 100%, 그 외 토지 50% 감면
-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지원으로 국민생활 안정 기여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최근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* 선포일(4.5.)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.

* 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

○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10개 지자체*이며,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100헥타르(ha) 이상 산림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주택, 농·축산시설 등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하였다.

* 대전광역시 서구, 충청북도 옥천군, 충청남도 홍성군·금산군·당진시·보령시·부여군, 전라남도 함평군·순천시, 경상북도 영주시 등 10개 지자체

□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조치는 산불로 인해 주거용 주택의 전소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 되었으며,

○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*를 피해지역 소재지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* 일반 국민이 주거용 주택에 관한 경계복원측량, 토지분할측량, 지적현황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,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, 첨부자료2 참고

- 주거용 주택, 창고, 농축산·상업시설 등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%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, 이외에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%를 감면받을 수 있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진, 태풍, 코로나-19,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.
 -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지역, 2019년 태풍(미탁) 피해지역, 2020년 코로나-19 특별재난지역(대구, 경산, 청도, 봉화), 2022년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총 55.1억 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였다.
-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·군·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누리집(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, <http://baro.lx.or.kr>) 및 전화(바로처리콜센터, 1588-7704)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.
-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“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 <공동>	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	책임자	과 장	유상철 (044-201-3478)
		담당자	사무관	박공열 (044-201-3479)
			주무관	고은정 (044-201-3486)
	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사업실	책임자	실 장	신서범 (063-713-1400)
		담당자	부 장	강재덕 (063-713-1401)
			과 장	도지찬 (063-713-1407)

참고 1

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사례

□ 집중호우, 태풍 피해 지원

1. 태풍(미탁)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2억원)

- 2019. 11월 태풍(미탁)으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% 감면, 주거용 주택 이외 피해복구시 50% 감면

2. 2020년 전국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7억원)

- 2020. 8월 전국 집중호우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% 감면, 주거용 주택 이외 피해복구시 50% 감면

3. 2022년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0.7억원, 진행 중)

- 2022.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% 감면, 주거용 주택 이외 피해복구시 50% 감면

4. 2022년 태풍(힌남노)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0.4억원, 진행 중)

- 태풍 「힌남노」으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% 감면, 주거용 주택 이외 피해복구시 50% 감면

□ 산불피해 지원

1.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10.2억원)

- 2019. 5월 강원 산불 피해지역에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% 감면, 주택 이외 피해복구시 50% 감면

2. 2022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1억원, 진행 중)

- 2022. 3월 동해안 산불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, 창고, 공장, 농축산·사업시설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% 감면, 이외 50% 감면

□ 지진피해,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 지원 등

1.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2.8억원)

- 2017. 11월 경북 포항 지진피해지역에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% 감면, 주택 이외 피해복구시 50% 감면

2.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(31.1억원)

- 2020. 3월 ~ 2021. 12월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(대구, 경산, 청도, 봉화)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모든 종목의 지적측량수수료 30% 감면

참고 2

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방법

□ 감면을 위한 구비서류

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[별지 제16호의3] <개정 2012.8.23>

피해사실확인서					
발급번호: 제 호					
피해자	주소		생년월일		
피해 내용					
대상	단위	피해 규모	피해물의 소재지	피해 일시	재해의 종류
용도					
제출처					
위 사실이 소문(명확)하고 있던 재산에 위와 같이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		
20 년 월 일					
신청인: 성 명 (인)					
생년월일					
주소					
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	
읍·면장					
위 사실을 확인함.					
년 월 일					
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					
※ 이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.					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4조에 의해 시장·군수, 구청장이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발급
-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장에게 제출
- 발급된 피해사실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
- 자연재해일로부터 2년간 감면 가능

□ 지적측량 신청 창구

회사	구분	신청방법
한국국토정보공사(LX)	방문	·지적측량접수창구(시군구청 민원실)
	인터넷	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(http://baro.lx.or.kr) - 회원가입 후 상담접수
	전화	·바로처리콜센터(1588-7704) 또는 관할 지자체 지적측량접수창구 - 허가 또는 토지이동이 필요한 등록전환측량, 분할측량은 관할 지자체 지적측량접수창구 이용
민간수행업체	전화 또는 방문	·가까운 민간수행업체 방문 또는 전화 접수 -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만 가능